

소송업무 규정

(제정) 2016.09.07. 규정 제35호
(일부개정) 2020.08.27. 규정 제90호
(일부개정) 2022.05.30. 규정 제12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김해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소송의 효율적 수행과 소송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소송사무”라 함은 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직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형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모든 소송사건은 대표이사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업무에 관한 그 지휘 감독과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팀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0.08.27., 2022.05.30.>

② 소송사건의 수행은 소송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0.08.27.>

제2장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제4조(법률고문) ① 재단은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재단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08.27.>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재단회계연도와 같이하되, 연도 중간에 위촉한 경우의 임기는 연도말에 종료한다. 다만,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 시로 한다.

④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소송대리인) ① 재단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경우 법률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해당 소송이 소액사건, 단독사건 등으로 그 성격상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담당자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8.27.>

제6조(고문변호사의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비용 등) 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3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8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때에는 해당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제기의 요청) 재단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표이사에게 제소 결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8.27.>

1. 제소 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 물가액 및 당사자 표시
4. 판결을 구하는 내용
5. 경위서
6. 증빙서류
7. 기타 참고사항

제10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재단의 운영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사건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0.08.27.>

1. 소송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법률고문의 의견

제11조(피소사건의 응소 결정)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0.08.27.>

②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제소 및 응소결정 후 지체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직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7.>

②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대리인의 직무) 소송대리인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송수행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7.>

1.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중 특히 가집행 선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제14조(소송보조자) ① 대표이사는 해당 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소송보조자(이하 “보조자”라 한다)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7.>

② 보조자에게는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자의 직무) 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2. 필요 시 변론기일,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예의 출석 또는 입회 시 보고
3.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16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 있어 재단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 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결손처분) 강제집행 불능사건에 관하여 장래에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 시효완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재단의 운영 및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패소 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임의의 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포함)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합의서[별지 제7호서식]

제21조(소송비용 청구)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변제한 경우 외에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소송비용을 재단 계좌로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재단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보다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을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별도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전문개정 2022.05.30.]

제22조(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에 의거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직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제23조(증인 등의 실비변상)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8.27.>

제24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25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강제집행 보전 조치) 경영지원팀장은 장래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7., 2022.05.30.>

제28조(입금절차의 순위) 소송에 의한 채권회수에 있어서는 「민법」 제497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이자, 원금의 순위로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건기록) 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일반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존처분, 구상권 행사, 소송 비용 회수 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③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회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되 원본안과 상호 관련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부칙<규정 제35호 2016.09.07.>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90호 2020.08.27.>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25호 2022.05.3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7조 관련)]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승소사례금	
	내 용	착 수 금		
민 사	1. 신청사건	50만원이내	없음	
	2. 본안사건(소송가액기준)		50%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소송가액	산정기준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160만원] × 1/2		80만원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0만원+(소송가액-1,000만원) × 5/100] × 1/2		80만원~180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60만원+(소송가액-5,000만원) × 3/100] × 1/2		180만원~255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10만원+(소송가액-1억원) × 1/100] × 1/2		255만원~705만원
10억원 초과	[1,410만원+(소송가액-10억원) × 0.5/100] × 1/2	705만원~		
	3. 상고심 및 환송심(본안심리)	본안사건의 1/20이내	"	
행 정	1. 신청사건	20만원이내	없음	
	2. 본안사건 ○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 준함 65만원이내	민사소송에 준함 "	
	3. 중요사건	150만원이내		
기타 소송 비용	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출장여비 :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6. 기타비용 : 실액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소 송 기 록 대 장

사 건 명		주무부		소 장 접수일		20		신 청		내용
								방	안	
								방	침	내용
								결	정	일자
신 청	사건번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 리 인					
제 1 심	사건번호	원 고	원 고	피 고	피 고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제 2 심	사건번호	항 소 인	항소인	피 항 소 인	피항소인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 리 인					
제 3 심	사건번호	상 고 인	상고인	피 상 고 인	피상고인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 리 인					
청 구 지										비 고
사 건 개 요 (피고원인)										

※ 선고일, 판결주문, 판결문 수령일 등을 결과 조치란에 기입

※ 증인사항, 수임료지급, 강제집행 등 사항은 비고란에 기입

[별지 제3호서식(제12조 관련)] <개정 2020.08.27.>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원

1. 사 건

2. 당 사 자

원 고

피 고

3. 법 원

법원

4. 소송대리인

소 속

성 명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피) 고

(재)김해시복지재단

위 대표자 대표이사 (인)

법원 귀중

[별지 제5호서식(제14조 관련)] <개정 2020.08.27.>

서 약 서

소직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재)김해시복지재단 소송업무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재)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제20조 서식)] <개정 2020.08.27.>

합 의 서

원 고

피 고

위 양인은 법원 호 사건에 대한 판결금 원 중

원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위 판결금 원 중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판결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이나 전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원 고 (인)

피 고 (인)

(재)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